

대법원 2021. 9. 30 선고 2021다241649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1. 9. 30 선고 2021다241649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5. 12 선고 2020나36436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6. 2 선고 2018가소3038202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6. 2 선고 2018가소3038202 판결

전문

원고, 피상고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최동욱

피고, 상고인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울 담당변호사 상종우

판결 선고 2021. 9. 30.

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5. 12. 선고 2020나36436 판결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,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,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김재형, 대법관 안철상, 주 심 대법관 노정희, 대법관 이흥구